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제3자 뇌물공여 부정당업자 제재업무 소홀

기 관 명 충청남도 계룡시, 당진시

내 용

충청남도 계룡시, 당진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각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무원 범죄사실을 통보받아 「지방공무원법」 제69조 및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제3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4조 등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당연퇴직” 등으로 처분(의결)되어 인사발령 조치하였다.

[표]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 현황

대 상 자			검찰처분 (처분일)	범죄 내용	행정 처분	
소 속	직 급	성 명			조치일	처분결과
계룡시	지 방 ○○○○	○○○	구 속 구공판 (`16.11.23)	㈜○○○○○○ 업체로부터 가로등 고효율 등기구교체, 관급자재 납품업체 선정 등 1,500만원 상당 뇌물	`17.3.29	당 연 퇴 직
당진시	지 방○○ ○○○	○○○	불구속 구공판 (`17.6.15)	○○중기 대표 ○○○ 외 4개 업체로부터 현금 3,000,000원, 1,681,500원 상당의 골프 향응	`16.12.31	해임 (징계부가금3배)
당진시	지 방 ○○○○	○○○	기소유예 (`17.6.15)	㈜○○○○○○ 대표 ○○○ 외 4개 업체로부터 현금 1,000천원 및 1,182,600원 상당의 골프향응	`17.01.01	강등 (징계부가금3배)
당진시	지 방 ○○○○	○○○	기소유예 (`17.6.15)	㈜○엔지니어링 영업이사 ○○○ 외 4개 업체로부터 1,601,500원 상당의 골프 향응	`17.01.01	강등 (징계부가금3배)
당진시	지 방○○ ○○○	○○○	기소유예 (`17.6.15)	㈜○○○○○○ ○○○ 외 2개 업체로부터 현금 1,000천원 및 518,600원 상당의 향응	`17.01.01	정직2월 (징계부가금3배)
당진시	지 방 ○○○○	○○○	기소유예 (`17.6.15)	㈜○○○○○○ ○○○ 외 1명으로부터 155,100원 상당의 향응 수수	`17.01.31	견책 (징계부가금1배)
당진시	지 방 ○○○○	○○○	기소유예 (`17.6.15)	㈜○○○○○○ ○○○ 외 1명으로부터 155,100원 상당의 향응 수수	`17.01.31	견책 (징계부가금1배)
당진시	○○○○	○○○	기소유예 (`17.6.15)	㈜○○○○ 부장 ○○○으로부터 363,500원 상당의 향응 수수	`17.01.01	견책 (징계부가금1배)

※ 자료근거 : 계룡시, 당진시 감사관실 제출자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나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이 있는 후 지체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위 관서에서는 [표]와 같이 범죄내용에 따르면, 관급자재 납품업체 선정 등 수주 알선을 위해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 및 향응수수 등을 받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의 피의사실 요지를 살펴보면 청탁 또는 알선명목에 해당 계약업체명 및 대표자 성명 등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수수일자 및 금액, 뇌물의 수수방법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위관서(감사부서)에서는 상기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사실을 검찰청으로부터 통보받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하고,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 또는 기소유예 처분 등이 이루어질 경우 지체 없이 회계부서에 통보하여 뇌물을 공여한 업체에 대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하여야 했다.

그러나 위 관서에서는 이 건의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해당 공무원을 징계 처분 하였음에도 ‘해당사건에 대하여 부정당업체 해당 여부 미인지, 공무원범죄 뇌물수수 공여자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의무적 통보규정이 없다’는 사유를 들어¹⁾ 관련공무원에게 제3자 뇌물을 공여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검토 및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관련된 15개 업체 중 (주)○○○○○○○ 등 12개 업체는 법원 판결 확정일 또는 기소유예 처분일로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충청남도 및 각 시·군에서 발주한 사업에 계속 참여하여 본청 등 13개 시·군에서 총 92건(계약액 7,929,859천원)의 계약을 부당하게 체결되도록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충청남도 계룡시장, 당진시장은

[시정] 제3자 뇌물을 공여한 관련 업체에 대하여는 계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하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1) [표1]의 공무원 범죄사건이외에 공주시, 청양군에서는 관련업체에 대해의 1개월 또는 6개월 부정당업자 제재조치